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설치하되, 종전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,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,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(5급 7명, 6급 6명, 7급 4명)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8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전주사보 1명을 운전주사로, 운전서기 1명을 운전주사보로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되, 그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5. ~ 8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3항 중 “함정 분야”를 “함정 분야(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25조의3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핵추진잠수함사업단: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, 핵추진잠수함사업팀, 핵추진체계사업팀,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

제27조의 제목 “(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)”을 “(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”을 “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,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”을 “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·핵추진잠수함사업팀·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,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”으로, “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”을 “핵추진잠수함사업팀·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

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(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)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2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한국형잠수함사업단”을 “핵추진잠수함사업단”으로 한다.

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별표 1의2 중 행정주사·세무주사·관세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 다음에 “운전주사 1”을 신설하고, “운전서기 1”을 삭제한다.  
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핵추진잠수함사업단(존속기한: 2029년 8월 14일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 |
| 일반직 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18 |
|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 | 7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    | 6 |
| 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항공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| 4 |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(운전주사 1명)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,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(운전주사보 1명)으로 보고,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(운전주사보 1명)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,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(운전서기 1명)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의3(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) ①·② (생략)<br>③ 합정총괄계약팀장은 <u>합정 분야</u>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br>④ ~ ⑨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3조의3(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 <u>합정 분야</u> ( <u>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</u> ) -----<br>-----.<br>④ ~ ⑨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5조의3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「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(생략)<br>2.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<br>가. ~ 바. (생략)<br>사. <u>한국형잠수함사업단: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,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</u><br><br>아. (생략) | 제25조의3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-----<br>-----<br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br>사. <u>핵추진잠수함사업단: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, 핵추진잠수함사업팀, 핵추진체계사업팀,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</u><br><br>아. (현행과 같음) |
| 제27조( <u>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7조( <u>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정원)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 
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 
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 
보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
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 
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 
로 한다.

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  
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  
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, 한국  
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  
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 
· 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  
로 보하고, 한국형잠수함전력사  
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  
기관 · 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 
장교로 보한다.

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  
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업무  
의 총괄 · 조정
2.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 
홍보 및 관련 회의체 등의 운  
영에 관한 사항
3.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 
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

정원) 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  
진잠수함총괄계약팀 · 핵추진잠  
수함사업팀 · 핵추진체계사업팀  
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 
두며,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  
장은 -----

----- 핵추진잠수함사업팀  
· 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  
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-----  
-----.

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  
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  
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 
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 
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  
다.

의 사항

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(제7호는 제외한다)을 분장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

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(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)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⑦ 핵추진잠수함사업단-----  
-----  
-----.